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연월일 : 2005. 3. 1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전담 기구를 신설하며
- 나. 기존의 일부 직제에 대하여 업무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이와 관련한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직제개편

- 도시개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도시국에 둠(안 제3조의2)
- 총무국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함(안 제5조제1항, 부칙 제2조)
- 사회산업국의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함(안 제6조제1항)
- 도시국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 변경하여 직제순을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분장사무 조정

- 신규사무 : 3건
 - 기반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 직원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국간 사무이관 : 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외 6건
- 용어수정 : 2건
 - 기획감사실 : 심사평가 ⇒ 자체평가
 - 보건소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기타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 2004.12.18)
- 입법예고 : 2005. 2. 25 ~ 3. 17 ▷ 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여유기구로 도시국에 도시개발과를 둔다.

제4조제2호중 “심사평가”를 “자체평가”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총무과,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무, 인사, 보안,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업무 총괄, 동행정지도, 선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기반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총괄
4. 구민건강생활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5. 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6. 직원 노사·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통신사업 추진 총괄
10.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11.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12. 지역문화예술진흥 추진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보행정, 관광 및 청소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14. 음반·비디오·게임물·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15. 민원행정, 호적,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제1항중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
2. 산업행정총괄 및 상공업무진흥, 중소기업지원

3. 일반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 육성 및 공원개발관리
5.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7. 수질행정, 대기보존 및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식품·공중위생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관리
9.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0.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2. 교통행정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3. 주차행정·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보상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전설비 유지 관리
5. 자연·인적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6. 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7. 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업무에 관한 사항
9.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10. 연안관리업무 총괄
11. 하수도 및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종합 조정
14. 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등 공부관리
15.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16.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호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조례 제494호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방재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방재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심사 평가에 관한 사항</u> 3. ~ 11. (생략)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u>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u>를 둔다.</p> <p>②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무, 인사, 보안, 의전행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u> 2. <u>자치행정업무 총괄, 동행정지도, 선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u> 3. <u>시민건강생활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u> 4. <u>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u> 5. <u>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u> 6. <u>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u> 7. <u>행정정보통신사업 추진 총괄</u> 	<p>제3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u>여유기구로 도시국에 도시개발과를 둔다</u></p> <p>제4조(기획감사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자체평가</u> 3. ~ 11. (현행과 같음)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 <u>총무과,</u></p> <p>-----</p> <p>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무, 인사, 보안,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u> 2. <u>자치행정업무 총괄, 동행정지도, 선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u> 3. <u>기반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u> 4. <u>구민건강생활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u> 5. <u>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u> 6. <u>직원 노사·복지업무에 관한 사항</u> 7. <u>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p>8.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p> <p>9. 지역문화예술진흥 추진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p> <p>10. 공보행정 및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p> <p>11.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사항</p> <p>12.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p> <p>13. 민원행정, 호적,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p> <p>14.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p> <p>15.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p> <p>16. 그 밖의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p>8.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p> <p>9. 행정정보통신사업 추진 총괄</p> <p>10.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p> <p>11.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p> <p>12. 지역문화예술진흥 추진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p> <p>13. 공보행정, 관광 및 청소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p> <p>14. 음반·비디오·게임물·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p> <p>15. 민원행정, 호적,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p> <p>16. 그 밖의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p>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사회 산업국에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교통 행정과를 둔다.</p> <p>②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삭제 2004. 6. 25></p> <p>2. <삭제 2004. 6. 25></p> <p>3. <삭제 2004. 6. 25></p> <p>4. 취업알선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p> <p>5.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p> <p>6. 수질행정, 대기보존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 -----,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 -----.</p> <p>②-----.</p> <p>1.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p> <p>2. 산업행정총괄 및 상공업무진흥, 중소 기업 지원</p> <p>3. 일반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p> <p>4. 산림보호 육성 및 공원개발관리</p> <p>5.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p> <p>6.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p>

현행	개정안
<p>7. <u>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u></p> <p>8. <u>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u></p> <p>9. <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 및 업무에 관한 사항</u></p> <p>10. <u>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u></p> <p>11. <u>산업행정총괄 및 상공업무진흥, 중소기업 지원</u></p> <p>12. <u>산림보호 육성 및 공원개발관리</u></p> <p>13. <u>수산행정에 관한 사항</u></p> <p>14. <u>교통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u></p> <p>15. <u>주차행정·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u></p>	<p>7. <u>수질행정, 대기보존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식품·공중위생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u></p> <p>9. <u>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u></p> <p>10. <u>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u></p> <p>11. <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u></p> <p>12. <u>교통행정종합계획수립 및 조정</u></p> <p>13. <u>주차행정·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7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를 둔다.</p> <p>②도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u>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2. <u>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보상에 관한 사항</u></p> <p>3. <u>도로·하천·구거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u></p> <p>5. <u>기전설비 유지 관리</u></p> <p>6. <u>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u></p> <p>7. <u>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업무에 관한 사항</u></p> <p>8. <u>공유수면에 관한 사항</u></p>	<p>제7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p> <p>②-----.</p> <p>1. <u>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2. <u>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보상에 관한 사항</u></p> <p>3. <u>도로·하천·구거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기전설비 유지 관리</u></p> <p>5. <u>자연·인적재난예방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u></p> <p>6. <u>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u></p> <p>7. <u>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u></p> <p>8. <u>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업무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9. <u>상·하수도 및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u></p> <p>10. <u>연안관리업무 총괄</u></p> <p>11. <u>건축행정에 관한 사항</u></p> <p>12. <u>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처리에 관한 사항</u></p> <p>13. <u>공장설립승인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u></p> <p>14. <u>식품위생업소허가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u></p> <p>15. <u>공중위생업소 신고에 관한 사항</u></p> <p>16. <u>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등 공부관리</u></p> <p>17. <u>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u></p> <p>18. <u>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u></p>	<p>9. <u>공유수면에 관한 사항</u></p> <p>10. <u>연안관리업무 총괄</u></p> <p>11. <u>하수도 및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u></p> <p>12. <u>건축행정에 관한 사항</u></p> <p>13. <u>주택건설사업계획의 종합 조정</u></p> <p>14. <u>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등 공부관리</u></p> <p>15. <u>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u></p> <p>16. <u>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u></p>
<p>제10조(소관업무)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4. (생략)</p> <p>5. 약사에 관한 사항과 <u>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6. <u>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u></p> <p>부칙<2000.9.30 조례 제494호> 제1조 (생략) 제2조(한시기구) ①제5조제1항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5.6.30까지로 한다. ②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중 제6조제2항제4호중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한다.</p>	<p>제10조(소관업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마약류</u> ----- <u><삭 제></u></p> <p>부칙<2000.9.30 조례 제494호> 제1조 (현행과 같음) <u><삭 제></u></p>